

2025

지적측량시행규칙, 지적업무처리규정

지적관련법규1

공간정보관리법

엠북 자격증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태블릿/PC용 전자책
- ★ 고득점용, 최근 법령 개정 반영
- ★ 지적 기사/산업기사/기능사 공통
- ★ 3시간 48분 완성, 암기코드 제공

도서명 : 지적관련법규1

ISBN : 979-11-7393-017-1

발간일 : 2025-05-12

형식 :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20,000원



지적관련법규1

[목차]

제1편 공간정보관리법(p4)

제1장 총칙(p5)

제2장 측량(p12)

제3장 지적(p56)

제4장 보칙(p93)

제5장 벌칙(p111)

제2편 지적측량 시행규칙(p113)

제1장 총칙(p113)

제2장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(p115)

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(p117)

제4장 보칙(p142)

제3편 지적업무처리규정(p144)

제1장 총칙(p145)

제2장 지적기준점의 관리(p146)

제3장 지적측량 절차 및 방법(p153)

제4장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(p173)

제5장 지적공부 등의 정리(p186)

제6장 보칙(p196~198)

제1편 공간정보관리법

[약어]

- 공부는 지적공부
- 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
- 부령은 국토교통부령
- 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
- 협회는 공간정보산업협회
- 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

- 시도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
- 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- 시군구는 (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), 시장, 군수, 자치구의 구청장
- 지자체장은
 - 시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 또는
 - 시도지사, (대도시시장) 소관청

- 경력등은 기술자의 근무처, 경력, 학력 및 자격 등
- 경력증은 측량기술경력증(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)
-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
- 고시는 고시 또는 정하여 고시

- 업자는 측량업자(측량업 등록 한 자)
- 지적업자는 지적측량업자(지적측량업 등록 한 자)
- 기술자는 측량기술자

- 지적기술자는 지적분야 측량기술자
- 수행자는 지적측량수행자
- 소재는 토지의 소재
- 소유자는 (건축물, 구조물 소유자 이외는) 토지 소유자
- 관계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인
- 등록정정은 등록사항의 정정
- 중앙위는 중앙지적위
- 지방위는 지방지적위
- 측변위는 측척변경위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노란색 형광펜은 암기방법 등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초록색은 최근 개정 내용

회색은 법령에 없는 내용

붉은색은 공인중개사 빈출문제

하늘색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장 총칙

1~4조

1. 목적

- 측량 기준/절차, 공부, 부동산종합공부 작성/관리
- 국토의 효율적 관리, 국민 소유권 보호

2. 정의

가. 측량

1) 공간정보

- 지상/지하/수상/수중 등 공간상 자연적/인공적 객체 위치정보 관련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

2) 측량

- 공간상 점들의 위치 측정, 특성을 조사해 도면/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 위치를 현지에 재현
- 측량용 사진 촬영, 지도 제작, 건설사업용 도면작성

3) 기본측량

- 모든 측량의 기초인 공간정보 제공을 위해 장관이 실시

4) 공공측량

가) 국가, 지자체, 다음 기관이 관계 법령상 사업 시행을 위해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

- (과학기술분야 포함) 정부출연연구기관
- 공공기관

-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, 지방공단(이하 지방공기업)

- 지자체 출자기관

-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

- 도시가스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

나) 이외의 자가 시행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공공 이해/안전 관련 다음 측량

- 1제곱킬로미터 이상 기준점측량, 지형측량, 평면측량

- 10km 이상 기준점측량

- 장관 발행 지도와 같은 축척의 지도 제작

- 1제곱킬로미터 이상 측량용 사진 촬영

- 지하시설물

- 인공위성 취득 영상에 좌표를 부여하는 2차원, 3차원 좌표측량

- 공공의 이해에 특히 관계 있는 사설철도 부설, 간척, 매립사업에 수반

5) 지적측량

-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거나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, 좌표, 면적 정함

가) 지적확정측량

-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나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함

나) 지적재조사측량

-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함

6) 일반측량

- 기본측량, 공공측량, 지적측량 외의 측량

7) 측량기준점

- 측량의 정확도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정 지점을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

좌표 등으로 표시해 측량 기준으로 사용

8) 측량성과

- 측량을 통해 얻은 최종 결과

9) 측량기록

-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 작업 기록

10) 지명

- 산, 하천, 호수 등 자연 형성 지형이나 교량, 터널, 교차로 등 지물/지역에 부여된 이름

11) 지도

-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 위치, 지형, 지명 등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

가) 수치지형도

-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분석, 편집, 입출력할 수 있게 제작

- 항공기/인공위성 영상정보를 이용한 정사영상지도 등

나) 수치주제도

-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특정 주제에 관해 제작

- 지하시설물도, 토지이용현황도

- 토지적성도, 국토이용계획도

- 도시계획도, 도로망도, 수계도

- 하천현황도, 지하수맥도, 행정구역도

- 산림이용기본도, 임상도, 지질도
 - 토양도, 식생도, 생태·자연도
 - 자연공원현황도, 토지피복지도
 - 관광지도
 - 풍수해/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
 - 재해지도
- 상기와 유사한, 관련 법령상 정보유통과 활용이나 공공목적상 정확도 확보가 필수적인 장관 고시 수치주제도

나. 지적

1) 지적소관청(이하 소관청)

-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, 시장, 군수, 구청장
- 제주도 행정시장 포함
-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**시의 시장 제외**
- 자치구가 아닌 구의 **구청장 포함**

2) 지적공부

-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과 도면
- **정보처리시스템(이하 정보시스템)**에 기록/저장된 것 포함

가) 대장은 **토/임/공/대**

- **토지대장, 임야대장, 공유지연명부, 대지권등록부**

나) 도면은 **지/임/경**

- **지적도, 임야도, 경계점좌표등록부**
- 지적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

3) 연속지적도

- 지적측량않고
- 전산화된 지적도면 파일을 이용해
- 도면상 경계점을 연결해 작성한 도면
- 측량에 활용못함

4) 부동산종합공부(이하 종합공부)

- 토지/건축물 표시/소유자, 토지 이용/규제, 부동산 가격 등
- 정보관리체계 통해 기록/저장

5) 토지 표시(소지지/면경좌)

- 공부에 토지 소재, 지번, 지목, 면적, 경계, 좌표 등록

6) 필지

- 대통령령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 등록단위

7) 지번

- 필지에 부여
- 공부에 등록된 번호

8) 지번부여지역(이하 지번지역)

-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
- 동/리나 이에 준하는 지역

9) 지목

- 토지의 주 용도에 따라 구분해 공부에 등록

10) 경계점

-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
- 지적도/임야도에 도해, 경계점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

1) 경계

-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공부에 등록한 선

2) 면적

- 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

3) 토지의 이동

-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, 말소

4) 신규등록

- 새로 조성된 토지와 미등록 토지를 공부에 등록

5) 등록전환

- 임야대장/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/지적도에 옮겨 등록

6) 분할

- 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

7) 합병

- 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해 등록

8) 지목변경

-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

9) 축척변경

-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해 등록

다. 용어

- 대도시는 서울, 광역시, 특별자치시 제외 인구 50만 이상 시
-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
- 연속지적도 포함
- 소유자는 법인 아닌 사단/재단은 대표/관리인 의미

3. 다른 법률과의 관계

- 측량과 공부/종합공부 작성/관리, 지명 결정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이 법 따름

4. 적용 범위

- 다음 측량 중 장관 고시 측량과 **수**로측량에 적용안함
- **국**지적 측량(단, 지적측량 제외)
- **고**도의 정확도 불필요
- 순수 **학**술 연구나 **군**사 활동 측량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2장 측량

제1절 통칙

제2절 기본측량

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

제4절 지적측량

제5절 측량기술자

제6절 측량업

제1절 통칙

5~11조

1. 계획

가. 장관의 의무

1) 5년마다 **측량기본계획**(이하 **기본계획**) 수립

- 내용은

· 기본 구상, 추진 전략

· 국내외 환경 분석, 기술연구

· 산업/기술인력 육성

· 측량 발전

2) 기본계획에 따라 **연도별 시행계획**(이하 **시행계획**) 수립/시행, 추진실적 평가

3) 기본계획/시행계획 수립시 평가 결과 반영

나.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

1) 평가항목은 **이행 충실성과 목표 달성 정도**

2) 원장은

- 필요시 관계 기관, 법인, 단체, 전문가에 평가 의뢰
- 세부사항 정함

2. 측량기준

가. 위치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(평균해수면에서의) 높이로 표시

- 단, 지도 제작 등을 위해 직각좌표와 높이, 극좌표와 높이, 지구중심 직교좌표 등으로 표시 가능

나. 측량 원점은 한국 경위도원점과 수준원점

- 단, 다음 지역은 장관이 따로 고시
- 1) 섬: 제주도, 울릉도, 독도
- 2) 상기 원점에서 멀어서 적용 곤란

3. 측량기준점

가. 국가기준점 (우위수/ 중통삼지)

- 장관이 측량의 정확도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국토 주요 지점마다 정함
- 측량의 기본
-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공공기준점과 지적기준점 따로 정함

1) 우주측지기준점

- 국가측지기준계 정립
- 전 세계 초장거리간섭계와 연결해 정함

2) 위성기준점

- 지리학적 경위도, 직각좌표, 지구중심 직교좌표 측정 기준
- 한국 경위도원점을 기초로 정함

3) 수준점

- 높이 측정 기준
- 한국 수준원점을 기초로 정함

4) 중력점

- 중력 측정 기준

5) 통합기준점 (통/위수중)

- 지리학적 경위도, 직각좌표, 지구중심 직교좌표, 높이, 중력 측정 기준
- 위성기준점, 수준점, 중력점을 기초로 정함

6) 삼각점 (삼/위통)

- 지리학적 경위도, 직각좌표, 지구중심 직교좌표 측정 기준
- 위성기준점과 통합기준점을 기초로 정함

7) 지자기점

- 지구자기 측정 기준

나. 공공기준점

-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의 정확하고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정함
- 공공삼각점은 수평위치, 공공수준점은 높이 기준